

해외출장 보고서

I. 출장 개요

- 출장 건명: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쟁점별 협상대책 연구
- 출장 목적: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및 DDA농업협상에서의 논의 주제들에 대한 쟁점 파악 및 대책 연구
- 출장 국가 및 주요 방문기관: 스위스 제네바 (WTO)
- 출장 기간: 2010. 7. 4 ~ 7. 10.
- 출장자 인적사항

부서명	직 급	성명
글로벌협력연구본부	부연구위원	권대흠

II. 출장 내용

- 출장 일정

일 정	주요 활동내역	비 고
07.4	출국 13:40 (서울-파리-제네바)	
07.5	10:00 : WTO workshop 참석	WTO
	15:00 : 호주/G10 합동회의 참석	WTO
07.6	10:00 : 비공식 전체회의 참석	WTO
	15:00 : 의장주재 고위급회의 참석	WTO
07.7	회의결과 정리 및 회의참석 준비	대표부
07.8	10:00 : 비공식 전체회의 참석	WTO
	15:00 : 의장주재 고위급회의 참석	WTO
07.9	09:00 : G10 공조회의 참석	WTO
	11:00 : Informal Open-ended 회의 참석	WTO
07.10	귀국 13:05 (제네바-프랑크푸르트-서울)	

- 주요 출장 결과

(1) 국내보조 및 수출경쟁 분야 양허표 양식 (Template): 7.5 & 7.6. 오전

가. 핵심요지

- 캐나다와 호주가 각각 국내보조, 수출경쟁 분야의 양허표 작업 방향 (road map)에 대해 발표함으로써 시장접근을 포함한 3대 축(pillar)에 대한 template Step 2 작업방향이 모두 정리됨.
- 발표내용에 대해 다수 회원국이 긍정적으로 평가. 다만,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양허표 양식 논의 과정에서 협상의 본질적 내용이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양허표 논의에 앞서 세부원칙 잔여쟁점, 텍스트 명확화, 데이터 부족 문제 등에 집중할 것을 주장.
- Template Step 2 논의방식에 대한 G-20의 제안에 대한 논의.
- G-20는 회람한된 문서(JOB/AG/11)를 통해 논의의 구조(structure)와 실질쟁점(substance)간에 분리될 수 있는 요소는 세부원칙(modality) 확정 전에 그밖에 분리될 수 없는 요소들은 세부원칙(modality) 확정 후로 나누어 template논의를 이분화(pre-, post-modality 구분)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스위스는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G10을 대표하여 양허표와 관련된 쟁점을 임의로 구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이러한 G10의 입장은 몇 차례의 G10공조회의를 통해 G10 발언문(statement)으로 작성되어 마지막날에 열린 open-ended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됨)

나. 상세내용

- 캐나다와 호주가 각각 국내보조, 수출경쟁 분야의 양허표 작업 방향 (road map)에 대해 발표.
- 캐나다는 국내보조 분야 양허표 양식에 대한 기본 outline을 발표하며, 동 발표 내용의 목적은 DDA 양허표와 Supporting table 작성을 위한 Step 2 논의의 초안(basic logic)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함.
- 세부원칙 4차 수정안(Rev.4)에 기초, 중립적이고 기술적인 요소를 다룸

으로써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

- 또한, DDA양허표와 Pre-Doha 양허표는 가장 큰 차이점은 구성 요소의 차이라고 설명함(Pre-Doha 양허표는 Total AMS만 기재한 반면, DDA 양허표에는 4가지 새로운 요소(OTDS, Overall Blue Box, 품목특정 AMS, 품목특정 Blue Box)가 추가로 존재).
- 호주는 수출경쟁 분야 양허표 양식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며, 캐나다의 국내보조 분야 프리젠테이션과 동일한 목적임을 강조.
- 수출경쟁 분야에서 양허되어야 할 요소는 수출보조 금액(Budgetary outlay) 및 물량 (quantity) 이며, 면화는 168항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
- 수출보조 분야 양허표의 경우, ① pre-doha 양허표가 기준점을 제시하고, ② 동 분야 양허표를 작성해야 하는 회원국이 한정되어 있어 검증이 용이하며, ③ 모델리티상 해당 규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④ 필요한 기초 데이터가 이미 존재한 바, 다른 분야에 비해 간단한 형태를 갖는다고 설명.

□ Template Step 2논의에 대한 회원국 반응

- 브라질은 G-20 그룹을 대표하여, 7.2일에 회람된 문서(JOB/AG/11)를 소개함.
- G-20는 회람한 문서에서 template step 2논의와 관련하여 논의의 구조(structure) 와 실질쟁점(substance)간에 분리될 수 있는 요소와 분리될 수 없는 요소들을 구분할 것을 제안.
- 이에 따라 분리될 수 있는 요소는 세부원칙(modality) 확정 전에, 분리불가능 요소들은 세부원칙(modality) 확정 후로 나누어 template논의를 이분화(pre-, post-modality 구분)할 것을 제안.
- 이와 관련, 미국은 template 논의가 세부원칙 4차 수정안(Rev.4)에 기초해야 하며, 실질적 쟁점에 대한 협상 결과를 예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G-20 문서의 기본방향에는 동의하나, "실질적 쟁점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에 수출보조(export subsidy)가 포함된 것은 혼란의 여지가 있다면, 자세한 설명을 요청.

- 이에 브라질은 수출보조 문제는 홍콩 각료선언에서 제시한 시한(2013년)과 관련이 있는 바, 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답변.
- 스위스는 G-10을 대표하여, template 논의는 ① 세부원칙 4차 수정안 (Rev.4)의 내용에 기초해야 하며 ② 기술적 논의에 국한하여 다자적이고 투명한 방식을 통해 논의되어야 하고, ③ 양허표에 기재되어야 하는 조항들은 회원국들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민감한 분야인 바, 모델리티 구조와 "level of ambition" 관계에 대한 논의는 자의적 해석을 초래하여 회원국 간 이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향후 template 논의는 모든 이슈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요지로 발언.
- EU는 5월 협상 시 논의된 시장접근 분야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template step 2 논의는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logic 또는 outline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며 2월에 아르헨티나가 회람한 문서는 현 단계가 아니라 추후에 논의되어야 할 내용(steps ahead)을 포함하고 있다고 발언.
 - 또한 G-20가 회람한 문서에서 논의의 구조(structure) 및 실질쟁점(substance)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나누어 명시한 것은 대단히 "자기편의적(highly self-serving)" 해석이라고 비판하고, 현행과 같이 향후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의함.
- 이에 대하여 브라질은 G-20 문서의 "실질적 쟁점과 분리 또는 분리할 수 없는 요소"들은 예를 들은 것으로, 다른 회원국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이며, EU가 언급한 것처럼 "self-serving"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논의의 명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
- 호주는 G-20가 회람한 문서에서 밝히고 있는 기본원칙(principles)은 template 논의에 있어 지금까지 모든 회원국들에게 받아들여진 사항으로 호주도 이에 동의한다고 언급하고, 다만 G-20측이 새로 주장하고 있는 사항(pre-, post-modality 구분)은 전체 프로세스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함.
- 아르헨티나는 브라질 발언 및 G-20 그룹의 문서가 template 논의가 어떠한 맥락 하에서 진행되어야 할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며 지지를

표명.

- Template 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델리티의 타결"인 바, 모델리티 관련 잔여 기술적 이슈(IQT AVE, TRQ 물량, VoPs)에 대한 논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또한, 인도, 중국과 함께 회람한 "텍스트의 명확화가 필요한 문서(CIA paper)"는 투명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아울러 data 검증시에 data의 부족(lacking data)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언급.

(2)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SSM): 7.6. 오후

가. 핵심요지

- ☐ G-33측은 7.2(금) 핵심국 대사급 회의에서 협의된 바에 따라 대응한 바, 우선 G-33을 대표하여 필리핀측 모두발언 이후, 우리나라/중국/터키/바베이도스 등이 회원국은 제약조건이 없는 SSM이 정상적 무역 증가를 방해할 것이라는 호주/캐나다 문서의 문제점을 차례로 반박.
- ☐ 발동기준을 충족하면 항상 SSM이 발동된다고 가정한 점과 수출이 급증한 사례를 골라서 분석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
- ☐ 우리측도 G33과 공조하면서 호주/캐나다측 자료에서 발견한 몇 가지 분석상의 문제점들을 지적. 특히 우리 농산물의 범위를 사실보다 넓게 설정하여 분석 결과가 부풀려져 있다는 점, 국내산이 없는 바나나에 대해 SSM이 자주 발동될 것이라고 비현실적인 결론을 내린 점을 비판.
- ☐ 이에 대해 개도국 수출국들은 다시금 "정치적 논조"의 발언을 통해 SSM에 대한 우려 등을 제기한 바, 논의의 별다른 진전이 실현되지 않음.
- ☐ 의장은 향후 논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음.

나. 상세내용

□ 호주측 모두발언

- 호주(본부 농업 SOM)는 지난 5월 SSM 소그룹회의시 회람한 바 있는 non-paper를 일부 보완하여 Job 문서로 공식 회람하였다고 밝히고, 주요 개선사항은 ①5월 회의 당시 혼선의 원인이 된 수입실적 그래프를 보완하여 절대수치에 기초한 그래프를 추가하였으며, ②몇개의 그래프를 추가하였다고 설명함.

□ 각국 발언 내용(발언순)

- 필리핀(Teehankee 대사)은 개인 사정상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인도네시아대사를 대신하여 모두발언한 바, 호주/캐나다의 Job 문서는 기본적으로 그간 G-33측이 작성-회람한 문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망스럽다고 언급하고,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적함.
 - "trigger breach equals invocation"이라는 관점하에 전체 관세선의 26~40%가 발동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SSG의 사례(개도국 사례)를 감안할 때 해당 trigger threshold가 breach되어도 발동하지 않을 관세선이 있을 것이기에 호주/캐나다 문서의 발동 수치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것 보다 많이 부풀려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
 - 유사 이유로 발동빈도(frequency)도 호주/캐나다 문서에서 적시한 수치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
 - 그래프와 관련, 모두 고성장 품목에 기초한 것인 바, 고성장 품목은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not sustainable), 상식에 기반한 세계평균 수치의 활용을 요구.
- 우리는 호주/캐나다 문서에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오류가 있다고 지적.
 - HS 6단위로 우리나라의 관세선은 681개이나, 호주/캐나다 문서는 745개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러한 오류로 인해 "발동 관세선 수" 및 "영향을 받는 무역비중" 등 여타 통계가 부풀려진 것으로 이해된다고 지적.
 - 아울러, 우리나라의 바나나 수입실적을 그래프로 포함하였으나, 우리는 바나나를 생산하지 않는 국가임을 고려할 때 추후 SSM을 이용하여 바나나생산 농가를 보호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고, 잘못된 사례로 간주

된다고 언급.

- 중국(Zhang 공사)은 호주/캐나다측은 다시금 중국 대두 사례를 포함하였으나, 특수한 상황에서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1999~2009년을 일반 경향(general trend)인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함.
 - 구체적으로, 4백만톤이었던 1999년 대두 수입이 10년 후 4천만톤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수출국들의 논리대로 이러한 예외적인 경향이 지속된다면 향후 10년간 추가로 10배의 성장이 있을 것이며, 이는 결국 중국의 대두 수입량이 4억톤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나, 전 세계 대두 생산량이 2억톤임을 감안할 때 이는 전혀 실현 가능한 수치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이렇듯 특수한 상황하의 실적을 일반화하여 이를 기초로 SSM을 축조하려는 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
- 터키(Aran 대사)는 호주/캐나다 문서는 기술적인 문서가 아닌 정치적인 문서로 보여진다고 표명하고, 터키 관련 통계의 경우 "발동 가능" 관세선내에 수입실적이 전무하거나 미미한 관세선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관련 수치가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함.
- 바베이도스(Williams대사)는 호주/캐나다 문서에 포함된 7개국의 수치를 일반화하여 SSM을 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함.
- 말레이시아(Harun대사)는 3~4개 주요 개도국에 대한 자국의 몇몇 농산물 수출자료를 기초로 분석작업을 진행해본 결과, SSM 도입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표명하고, 비록 초보적인 분석이나 문제가 있음이 확인된 이상, 관련 국가와 협의를 통해 추가로 논의하고 싶다고 언급함.
 - 아울러, 개도국산 농산물의 가격이 대체로 선진국산 보다 더 낮음을 고려할 때, 개도국 수출국들이 가격기준 SSM의 피해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보인다고 언급하고, 향후 논의시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
- 태국(Sopahstienphong대사) 및 코스타리카(Saborio대사)는 정치적 성격의 발언을 통해 개도국 수출국들의 입장을 다시금 강조함.
 - 태국은 UR bound 초월 사례는 DDA의 이득을 무력화하는 것이므로 DDA에 대한 국내적인 지지기반을 확충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표

명.

- 코스타리카는 SSM이 필요하다면 순수한 수입폭 증 등 특수 상황 (specific problem)에 국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UR bound 초월 사례는 시장접근 협상의 성과를 뒤집는 것이므로 수용불가하다고 주장하고, UR의 SSG가 관세화/쿼터철폐 등 자유화와 연계되어 있듯이 SSM도 자유화와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만약 기존 양허에 대한 roll back(양허후퇴)이 필요하다면 GATT 28 조에 의거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 (아울러 하반기에는 자국의 분석 자료를 회람할 것이라고 언급).
- 캐나다(Gauthier 농업 SOM)는 "제한없는(unconstrained) SSM"을 축조할 경우 동 SSM이 너무 자주 발동되는 등, 수출국들에게는 너무나 큰 불확실성(uncertainty)이 추가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문서를 작성-회람하였다고 언급하고, 수출국들의 comfort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함.
- 인도(Bhatia대사)는 지금까지의 논의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
 - SSM 관련 소그룹회의가 problem solving mode로 진행해 본다는 전제하에 2009.11월 이후 최근까지 근 8개월간 진행되어 왔으나, G-33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심 이슈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음.
 - 핵심이슈 중 하나인 "Normal trade"의 경우 갑작스레 대두된 것으로, 이에 대한 인식의 괴리가 여전한 상황이며, 「trigger threshold에 도달할 경우 SSM은 무조건 발동된다(breach of trigger equals invocation)」는 수출국들의 잘못된 인식도 (SSG 사례를 통한) G-33측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기술적 협의"가 필요한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시점으로, 혹 다른 형태의 논의가 필요할 것인지도 심사숙고해야함.
 - 특히, G-33측이 기술적 문서를 회람하며 기술적인 논의에 응할 의향을 거듭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국들은 거시적-정치적 논조의 발언/자료만을 회람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고민을 진행해 보지 않을 수 없음.

- 브라질(Flavio Soares 공참)은 ▲공통된 기술적 假定(common technical basis) 없이 논의가 진행된 점, 그리고 ▲정치적인 지원 없이 논의가 진행된 점 등이 현재와 같이 진전 없는 SSM 논의를 초래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언급하고,
 - 인도측이 언급한 사항 관련, Normal trade는 2008.7월 타협안이 모색될 때 각료급 회의에서 제기된 이슈로서, 동 계기에 지침(guidance)이 제시되었다면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나 그렇지 않아 현재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첨언.
 - 인도측이 제기한 두 번째 이슈 관련, G-33측의 설명은 이해할 수 있으나, 다자 규범을 축조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명료화(clarity)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
- EU는 SSM 관련 논의가 진전이 아닌 후퇴중(we are going backwards)이라고 진단하고, EU는 기본적으로 SSM의 필요성을 인정하나,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함.

□ 의장 마무리 발언

- 농업의장은 새로운 분석자료를 회람한다면 언제든지 이를 기초로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problem solving mode로 전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함.
- 향후 SSM 소그룹 논의를 중단할지, 아니면 현행 format으로 진행할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관련 국가들의 의사에 따라 향후 process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

(3) 농업총생산액 (VoP): 7.8. 오전

가. 핵심요지

- 농업총생산액 계산에 포함시킬 품목의 범위, WTO 웹사이트에 운영 중인 VoPs forum 활용 현황 등 그간의 논의 상황을 재점검.
- 다수 회원국이 WTO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교환이 유용하기는 했지만, 회

의를 통한 논의를 대체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

- 우리측은 NAMA 협상에서 해조류를 농업에 포함시켰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농업총생산액 계산에 해조류를 포함시킨 이유를 설명.

나. 상세내용

□ 농업총생산액 (VoP) 관련 논의 현황

- VoPs 논의의 facilitator인 남아공 측은 09년 12월 이후 농업총생산액 (VoPs) 검증과 관련 논의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 농업총생산액 정의 및 계산방법의 경우, 농업협정 Annex I 상 농산물 정의에 근거하고, 기준가격은 farm gate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포도는 포함되나 포도주는 포함되지 않는 다고 언급함.
 - 농업총생산액 (VoP) 계산시 수산물 포함 문제는 아직 회원국 간 최종 합의된 바가 없으며(there was no final consensus), 향후 NAMA 협상 추이를 지켜본 뒤 농업협상 포함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임.
 - 농업총생산액 (VoP) 논의의 기존 facilitator인 남아공 농무관이 귀국함에 따라 노르웨이 농무관이 VoPs 논의의 새로운 facilitator로 선임됨.
- WTO 웹사이트에 운영 중인 VoPs forum의 활용 방안에 대해 다수 회원국이 웹사이트를 통한 질의, 응답이 유용하기는 하지만, 협상 주간의 논의(dialogue)를 대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 금일과 같은 format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 회원국간 질의 및 응답

- 호주는 회원국들에게 지금까지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업데이트 자료를 작성, 제출했는지 문의함.
 - 일본은 업데이트 작업을 완료하여 지난 2월에 사무국에 제출했으며, 자국은 해조류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했고 노르웨이가 제출한 자료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했다고 언급.
 - 노르웨이 또한 해조류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했음을 확인.
 - 우리나라는 NAMA 텍스트안을 근거로 NAMA에서 농업품목으로 변동

된 해조류를 농업총생산액에 포함시켜 통보했으며, 이는 모델리티 타결 이후 갑자기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any surprise after modality stage)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면서, 다만 해조류 비중은 0.5~0.7% 정도로 매우 미약한 숫자임을 강조.

- 캐나다는 미국측에 VoP forum을 통해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서, 미국이 재제출한 VoP 데이터(revised data)의 일부 기간에 있어 10억 불 이상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계산시 기술적 수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품목범위의 변경이 있었던 것인지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함.
- 미국은 금일 회의가 자국이 질문이 질문을 받은 이후 첫 번째 회의임을 강조하고, 곧 답변을 서면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후.
 - 최근 업데이트한 자료의 변경된 수치는 방법론(methodology)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평균 0%~8% 정도 변경이 있었는데 이는 대단한 증가(no large increase)는 아니라고 주장.
 - 아울러 임산물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1995-2000년 기간 수치에 일부 가축(livestock)을 추가했으나 현 AMS 계산에는 영향이 없으며, 이는 자료를 업데이트할 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시차(timelag) 문제이고, 품목 분류 변경 또한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중대한 이슈는 아니라는 의견을 표명.
 - 동 자료의 출처와 관련해서는 곡물, 가축 등 품목별로 정리한 자료는 없으나, 미국 전체 생산액과 주 단위 생산액을 정리한 연간 생산액 자료(annual book) 및 U.S statistical book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기타 가금류(poultry) 품목 분류 또한 명시되어 있다고 발언.
- 호주는 수치의 미미한 변화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답변이 검증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bio product의 농산물 포함 여부를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

□ VoP Forum에 게재된 질의에 대한 각국의 응답

- 이어 새로운 facilitator로 선임된 노르웨이가 VoP Forum에 게재된 질

의를 순서대로 거명, 회원국들의 답변을 요청.

- 아르헨티나는 해조류 생산액은 농업총생산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 액수도 아주 작을 것이라고 대답하고 자국의 농업총생산액은 농산물과 축산물만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엑셀 자료를 VoP forum 웹사이트에 올렸다고 답변.
- 코스타리카는 현재 답변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다만 잠정적인 답변임을 전제로 해조류와 모든 어류는 농업총생산액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언급.
- EC는 1999년 ECU에서 Euro로 화폐를 바꾸었으나 1:1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농업총생산액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
- 스위스는 자국 농업총생산액이 Eurostat 방법론에 근거하고 있는 EAA(economic accounts for agriculture)에서 나왔다고 설명하고 이는 스위스 농업의 99%를 포괄하는 농업구조 조사에 의한다고 첨언함.

□ 농업총생산액 (VoP) 논의 전반에 대한 추가적 논의

- 아르헨티나는 농업총생산액은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이어야 하고 이를 세부원칙에 첨부해야 함을 강조함.
- 호주는 세부원칙 4차 수정안(rev. 4) para 12에 따라 농업총생산액을 세부원칙에 부속서로 첨부해야 하는 데 형식(format)의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미국은 형식(format)을 논의하기에 앞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임.

(4) 관세단순화: 7.8. 오후

가. 핵심요지

- EU의 관세단순화 작업 내용에 대한 EU의 설명에 이은 질의 및 응답이

있었음.

□ 텍스트와 Annex N의 불일치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참석국들이 기존 입장을 반복함에 따라 별다른 진전은 없었음.

○ 우리측은 2008년 세부원칙 4차 수정안(rev. 4) 기준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고, 종가세 전환 목표치를 초과하는 회원국에게는 Annex N이 적용되어서는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

○ 호주는 관세단순화 논의의 이견차를 해소할 수 있는 중립적인 exercise에 대한 작업 방향을 추후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언급.

나. 상세내용

□ 의장은 3월 stock-taking 보고서에서 관세단순화의 경우 Annex N과 텍스트의 불일치 문제에 대해 회원국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EU의 관세단순화 관련 논의 및 그 후 추가적인 자세한 진전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

□ EU의 관세단순화 관련 논의

○ EU는 지난번 matrix tariff의 관세단순화 프리젠테이션 이후, 동 방법에 따른 관세단순화 이후 비종가세에 대한 관련자료를 작업 중이며, 전체 관세선이 상당히 단순화(simplified) 되었다고 언급. 또한, 요청이 있을 시 추후 회원국들이 관심 있는 sugar 등 품목을 사례로 단순화 작업 내용을 설명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

○ 아르헨티나는 이에 대해, 관세단순화에 따라 새로운 관세선이 생기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품목을 고르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EU의 경우 특히 복잡한 관세구조를 갖고 있는 바, 모든 관련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아르헨티나와 EU의 논쟁이 계속됨.

○ 이에 EU는 이미 회원국 간에 동의가 이루어진 방법(methodology)으로 관세단순화 작업을 하는 것인 바, 세부적으로 모든 특정 품목을 보아야

할 필요는 없으며,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운용 방법을 보는 것이라고 응수.

- 아르헨티나는 방법은 부차적인 것이며, 방법 자체가 관세단순화 논의를 주도할 수 없다고 반박.
- 브라질은 EU의 관세체계는 밀가루, 낙농품, 설탕의 조합에 따라 많은 경우의 관세선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잠재적인 관세선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
- 미국은 EU가 어느 정도의 관세선을 단순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였는바, EU는 전체 27,000여개 관세선이 277개 관세선으로 준다고 설명.

□ 텍스트와 Annex N의 관계에 대한 논의

- 아르헨티나는 종가세 전환 시 일부관세선의 실질적 보호수준 상승의 문제가 있으며, 수출업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Annex N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함.
- EU와 우루과이는 관세단순화 과정에서 수입국의 보호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Annex N이 도입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킴.
- 미국은 텍스트와 Annex N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조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
- 우리는 2008년 세부원칙 4차 수정안(rev. 4) text 기준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을 확인하는 한편, Annex N은 회원국들이 관세단순화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동 종가세 전환 목표치를 초과하는 회원국에게는 Annex N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
- 일본은 Annex N이 관세단순화에 따른 회원국 입장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Annex N에 따른 3차례의 관세단순화 작업은 자국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면서, 이러한 복잡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

- 호주는 관세단순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국은 관세단순화 논의의 이견차를 해소할 수 있는 중립적인 exercise에 대한 작업 방향을 여름 휴가후 제시할 예정이라고 언급.

* 이와 관련 호주의 Jonathan 농무관에게 문의한 바, Annex N의 3차례 종가세 전환방식을 예측성(predictability)제고를 위해 한 차례로 줄이는 내용이라고 언급하면서 자국의 제안을 관련국과 실무급에서 비공식 협의를 하고 있다고 언급함.

- 의장은 수입국과 수출국의 입장에 따라 개념적 차원에서 해석에 대한 접근과 우려 사항이 다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수출국과 수입국 회원국이 논의를 통해 입장 차이를 줄여 줄 것을 주문함.

(5) G10 공조회의: 7.5. 오후 및 7.9. 오전

가. 핵심요지

- Open-ended 회의시 template step 2논의와 관련한 G-20의 회람 문서와 관련하여 G-10의 발언문을 통해 향후 template 논의는 모든 이슈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요지로 발언하기로 결정.
- SSM 관련 의장주재 고위급 회의 관련 논의와 관련, 우리측은 G33의 기본 입장이 캐나다/호주측이 새로 회람한 SSM 문서가 수출국들의 기존 논리를 답습하는 등 SSM 논의에 새로이 기여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라고 전달.
- 중국, 인도, 아르헨티나가 제기한 세부원칙 4차 수정안(Rev.4)의 text 명확화 이슈에 대해 향후 논의가 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됨.
- 아울러 지난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 대한 평가와 추후의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한 전망이 논의됨.

나. 상세내용

- Open-ended 회의시 template step 2논의와 관련한 G-20의 회람 문서와 관련하여 G-10의 발언문을 작성하기 위한 회의를 몇 차례 개최하여 문안 수정을 협의함.
- G-20의 회람 문서는 template step 2논의와 관련하여 논의의 구조(structure) 및 실질쟁점(substance)의 분리될 수 있는 요소와 분리될 수 없는 요소들을 구분할 것을 제안.
 - 이에 따라 분리될 수 있는 요소는 modality 확정 전에, 분리불가능 요소들은 modality 확정 후로 나누어 template논의를 이분화할 것을 제안(pre-, post-modality 구분).
- G-10은 발언문을 통해 template 논의가 rev.4의 내용에 기초해야 하며 기술적 논의에 국한하여 다자적이고 투명한 방식을 통해 논의되어야 함을 다시 확인.
 - 아울러 양허표에 기재되어야 하는 조항들은 회원국들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민감한 분야인 바, 모델리티 구조와 "level of ambition" 관계에 대한 논의는 자의적 해석을 초래하여 회원국 간 이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 따라서 향후 template 논의는 모든 이슈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요지로 발언하기로 결정.
- SSM 관련 의장주재 고위급 회의 관련 논의.
 - G-10 회원국들은 SSM 관련 의장 주재 고위급 회의 논의 내용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G-33의 일원인 우리측의 자세한 설명을 요청.
 - 우리측은 이날 회의는 수출국들과 G33측이 논쟁을 주고받는 가운데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고 회의장 분위기를 전하고, G33의 기본 입장은 캐나다/호주측이 새로 회람한 SSM 문서가 수출국들의 기존 논리를 답습하는 등 SSM 논의에 새로이 기여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라고 전달.

- 특히, 인도는 수출국들이 SSM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SSM에 대한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언급.
 - 일본은 최근 의장이 전임 팔코너 의장과 달리, 논의에 있어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G-33은 SSM 논의에 있어 의장에게 많은 input을 줌으로써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첨언.
- 중국, 인도, 아르헨티나가 제기한 세부원칙 4차 수정안(Rev.4)의 text 명확화 이슈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활동은 없지만, 향후 논의가 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됨.
- 인도, 중국, 아르헨티나 3국은 제안서 ("CIA paper")와 관련 그간 여타 그룹(아프리카그룹, G-20, 케언즈그룹)을 상대로 outreach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언급하고, 전반적으로 세부원칙 4차 수정안(Rev.4)의 text 명료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언급함.
 - 최근에는 RAM 그룹도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표명하고, 세부원칙 4차 수정안(Rev.4)에 대한 명료화 논의를 진행할 것을 다시금 요청.
 - 노르웨이는 7.9(금) 전체 회의가 평소와 달리 한 시간 늦게 11:00에 개최될 예정인 것과 관련, CIA paper에 대한 소그룹 회의가 개최되는 것인지 여부와 최근 RAMs 등 CIA paper 논의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의.
 - 이에 스위스는 의장은 CIA 문서에 대한 소그룹 회의는 일회성(one-shot exercise)임을 표명한 바 있고, 새로운 process를 신설할 의도는 아니라는 점을 표명한 적이 있다고 답변.
 - 우리 측은 현재 케언즈 그룹도 CIA paper가 제기된 것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아무도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지 않은 바, 논의 여부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임을 지적.

- 또한, 최근 관련국간 협의를 통해 중국 등 2개국이 자국 관련 명확화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이 모든 회원국을 포함하는 다자적 논의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
- 대만은 RAMs 조정국으로서, 금일 회람된 RAMs 문서에 반영된 CIA paper 관련 문구 관련, G-10그룹일원이 대만과 G-20 등 다른 그룹 소속 회원국들간의 의견일치가 안돼 “명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현 단계에서 논의될 수 필요는 없다”문구를 선택했다는 조정 배경을 설명.
- 다만, RAMs 문서의 “명확화 필요성”이 반드시 CIA paper에서 제기된 리스트(list)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자국이 파악하기로는 인도, 중국, 아르헨티나의 의도 또한 동 문서에서 제기한 리스트list를 기초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첨언.

□ G-20 정상회의관련 논의

- 우리나라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많은 시간을 DDA 논의에 할애했으며, 동 이슈에 대한 정상들의 인지도와 이해가 제고되었음을 평가.
- 특히, 정상들이 각국 대표들(representatives)로 하여금 DDA 협상에서 진전된 내용(progress)을 보고하도록 지침을 준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노르웨이는 G-20 서울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DDA 협상 맥락에서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 인지를 문의.
- 우리측은 G-20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지침을 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회원국들이 현실성 있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함.

(5) Informal Open-ended 회의: 7.9. 오전

가. 핵심요지

- 의장은 금주에 진행된 각종 회의(국내보조 및 수출보조 감축 template, SSM, 관세단순화, 농업총생산액 등의 회의)의 결과를 간단히 설명하는 한편, 앞으로 농업총생산액, 품목특정 AMS 및 품목특정 BB, 및 관세단순화 작업을 위한 data의 완비를 위한 작업을 진행할 의향을 표명.
- 2010년 하반기 WTO 협상 process와 관련하여, 현행 process를 계속 진행할 의향을 표명하고, 하반기 일정에 대해서는 7월말에 통지문을 통해 자신의 구상을 대략적으로 밝힐 것임을 표명.

나. 상세내용

- 농업총생산액(VoP) 관련, VoP 회의의 신입 facilitator인 노르웨이 농무관은 VoP 관련 회원국간 비공식회의의 결과를 요약-정리함.
 - 그간 개최된 VoP 회의시 도출된 VoP 관련 제 원칙(principle)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밝히고, 향후 작업으로 ▲VoP 자료 추가 보완(국가별 연도별 자료 완비), ▲취합된 자료의 검증 등이 있다고 밝히고 이를 추진할 것임을 표명.
 - VoP 이슈가 특히 국내보조 분야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이자 매우 중요한 이슈임을 고려, 앞으로도 회원국 중심으로 투명한 방식하에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표명.
- 농업의장은 data 문제와 관련, 다음과 같이 현 상황 및 향후 작업계획에 대해 언급함.
 - VoP 관련 data set이 조속한 시일내에 취합될 수 있도록 노력 예정.
 - 품목특정 AMS 및 품목특정 Blue Box data 및 이의 부수적 자료(supporting data)의 경우, 해당되는 국가(선진국)들이 아직 관련 자료

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data set 완비, ▲회람 방법 결정 및 집행, ▲동 자료의 공식화(documentation) 등이 향후 진행해야 할 작업이라 표명.

- 관세단순화(AVE 전환)를 위한 data 문제와 관련하여, 사무국에서 추진 중이나 회원국들의 협조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

□ 농업의장은 금주에 SSM 및 관세단순화 회의를 주재하였다고 설명하고, 논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짧게 설명함.

- SSM의 경우, 호주/캐나다 회람 문서를 기초로 추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지금까지 여러 개의 기술적/분석적 자료가 회람되었음을 고려, 앞으로는 보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problem solving approach)"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고 언급.
- 관세단순화의 경우, 관련 국가들은 추가적인 기술적 협의를 개최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향후 작업의 일환으로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작업의 결과를 기초로 하반기에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표명.

□ 금주회의에 대한 각국의 발언

- 스위스는 G-10을 대표하여 발언한 바, 양자/복수국간 협의는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논의/확정된 내용이 다자화되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향후 진행될 양자/복수국간 협의시 G-10그룹이 초청되도록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아르헨티나는 관세단순화, VoP, CIA paper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언함.
 - 관세단순화와 관련, 현행 Rev.4에 명시된 2개의 옵션 공히 DDA협상 타결의 결과를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주장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
 - VoP 및 data 문제 관련, 아직 완비되지 않은 data set을 완비하는 하는

것도 중요하나, 모델리티 타결은 물론, 현행 모델리티의 명료화 작업 등 보다 거시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강조.

- 대만은 최근 회람된 RAM그룹의 문서를 소개한 바, 인도는 CIA paper에 대한 지지 의사를 평가하고, 하반기에 모델리티의 명료화 작업을 진행할 것을 다시금 제의함.

- 농업의장은 2010년 하반기 WTO 협상 process와 관련하여, 현행 process를 계속 진행할 의향을 표명하고, 하반기 일정에 대해서는 7월말에 통지문을 회람하여 대략적인 자신의 구상을 밝힐 것임을 표명함.

III. 시사점 및 특이사항

(1) 협상결과 및 향후 전망

- 이번 협상에서 새로운 진전 사항은 없었으나, 협상 그룹별로 향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움직임은 활발한 것으로 파악됨.
- 양허표 양식 논의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면서 그 내용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논의는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커서 당분간 진전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임.
- 농업총생산액 논의는 회원국의 자료 제출 및 검증 활동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음.
- EU의 관세단순화 진행상황점검 및 텍스트와 Annex N의 불일치 문제 등을 논의하였으나 진전된 내용은 없었음.
- 세부원칙 4차 수정안(Rev.4)의 text 명확화 이슈도 중국, 인도, 아르헨티나 주도로 금년 하반기 이후부터 논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음.

(2) 금번 협상결과의 시사점

- G33 및 G10 그룹 회원국들과 긴밀히 공조하여 협상 동향 및 쟁점별 정보를 교환하여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내보조 및 시장접근 분야 양허표를 중심으로 관련 데이터를 재점검하고 기술적 쟁점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논의는 G33과의 공조를 통해 협상결과를 유리하게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농업총생산액 계산에 사용한 관련 데이터를 재점검하여 향후 검증 활동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관세단순화 논의와 관련하여, G10그룹 및 EU와 공조하여 관세단순화 전환 목표치 이외의 세번들은 사전적으로 Annex N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안을 채택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세부원칙 4차 수정안(Rev.4)의 text 명확화 이슈와 관련, 이슈별로 우리측 대응입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되, 이러한 논의에 반대하는 G10의 입장을 고려하여 신중히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면담자 인적사항

소속기관	직 급	성 명	연 락 처
농림수산식품부	공사참사관	이준원	079-688-4236
외교통상부	서기관	이호열	079-401-8413